



**NNEDV**  
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1325 Massachusetts Ave NW  
7th Floor  
Washington, DC 20005-4188

**NNEDV.org**  
phone: 202.543.5566  
fax: 202.543.5626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를 위한 HUD CoC 및 ESG 수혜자 모니터링

HUD CoC(Continuum of Care) 및 ESG(Emergency Solution Grant) 기금을 받는 가정 폭력 가해자는 고객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라는 보조금 기금 감사관 및 모니터 요원의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리소스는 가정 폭력 프로그램 및 기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가 피해자의 기밀을 보호하고 HUD 기금과 관련된 감사 및 모니터링에 참여할 책임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 리소스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VAWA, FVPSA 및 VOCA가 지원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 수혜자는 일상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HUD 감사관에게 개인 식별 피해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는 개인 식별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HUD 감사 및 기타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히 말해서 VAWA, FVPSA 의회에서 부과한 보편적 보조금 조건에 따라, VOCA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인 식별 피해자 정보(PII)는 기밀이며, 자금 제공자에 대한 보고, 프로그램 평가 참여 또는 정기 감사 준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자와 감사관은 연방, 주, 부족 또는 지역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계 데이터(총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가 (피해자의 사면 동의 없이) 개인 식별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은 연방 및/또는 주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연방 VAWA, FVPSA 및/또는 VOCA 기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 조건은 또한 프로그램이 서비스 조건 공개에 대해 서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VAWA, FVPSA 및 VOCA의 기밀 유지 요건에는:
  - 행정 법규에 의한 공개에 예외가 없으며, 그리고
  - 수혜자 감사관이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키가 있는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 공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VAWA, FVPSA 및 VOCA에는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PII가 공개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 공개로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시도를 해야 하며, 그리고
  - 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영리 조직의 기록에 대한 연방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일상적인 감사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름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는 HUD 감사에 협력해야 하므로 관리 직원은:
  - 감사관이 기관 기록을 검토하도록 지원하고,
  -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 수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리고
  -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 피해자 식별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관련 법령

### 여성폭력방지법(VAWA)

2005년부터, VAWA는 연방 보조금 관리자 및 감사관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 식별 피해자 정보(PII)를 명시적으로 보호했습니다.

VAWA 2005는 2005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6년 1월 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VAWA 기밀 유지 조항은 2013년 VAWA 재승인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VAWA 2013에는 VAWA 수혜자가 개인 식별 피해자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보편적인 보조금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AWA에는 VAWA 및 HUD 기금을 모두 받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에 대해 의회에서 의무화한 기밀 보호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1. [VAWA 2005 섹션 605](#),<sup>1</sup>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HMIS)에서 PII의 공개를 금지하는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개정안.

VAWA 2005 섹션 605는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인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HMIS)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다룹니다. 이 조항에서 의회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가 HMIS 시스템에 PII를 입력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맥킨리-벤토 노숙자 지원법을 수정했습니다. HMIS에 PII 입력 금지(42 USC §11363)와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 및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의 정의는 VAWA 2005(42 USC §11360(16), (32)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HMIS(단일 또는 기타 정보와 함께)에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입력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 [VAWA 2013 섹션 3](#) 보편적인 보조금의 조건: 기밀 또는 개인 정보의 비공개<sup>2</sup>

VAWA 2013 섹션 3, 모든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의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 활용 또는 거부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수집한 개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VAWA(34 USC §12291(a)(20)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a)(20)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용어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는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의 위치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이름과 성;
- (B) 집 또는 기타 물리적 주소;
- (C) 연락처 정보(우편, 이메일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전화 또는 팩스 번호 포함);
- (D) 사회 보장 번호, 운전 면허증 번호, 여권 번호 또는 학생 ID 번호; 그리고
- (E) 개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년월일, 인종 또는 민족 배경이나 종교를 포함하는 기타 정보.

이 메모는 지리 또는 인구 통계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그러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커뮤니티가 지리적으로 작거나 인구통계학적으로 고유할수록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기록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VAWA 2013은 연방, 주 또는 부족 보조금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정보 공유에 동의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는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집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VAWA 2013 섹션 3은 “연방, 주, 부족 또는 영토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집계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 및 인구 통계 정보의 공유”를 구체적으로 허용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해야 하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보고 및 책임 활동의 일부로 개별 외상 생존자의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FVPSA)

**2010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FVPSA)은 피해자 비공개를 위한 VAWA 표준을 채택했습니다.**<sup>3</sup>

2010년 12월 20일부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FVPSA)은 자금 조달의 보편적인 조건으로서 VAWA의 언어를 면밀하게 반영하는 기밀 유지 요건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FVPSA는 항상 기밀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FVPSA에 따른 개인 식별 정보 보호의 윤곽이 VAWA에 따른 보호와 동일하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졌습니다.

FVPSA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수혜자는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FVPSA의 목적과 조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전 프로그램 발표에 반영된 그러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프로그램 활동 및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때 클라이언트 기록의 개별 식별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VPSA에 따라 프로그램은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연방, 주 및 부족 보조금 보고 및 평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계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

2016년, 범죄 피해자 대책실(OVC)은 피해자 지원 수혜자가 피해자 PII를 공개할 수 없도록 여성폭력방지법(VAWA) 표준을 채택했습니다.<sup>4</sup>

2016년 7월 현재, 피해자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1984년 범죄피해자법의 일부, 42 USC §10601 이하 참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 식별 및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대책실은 정보 비공개에 대한 VAWA 표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VAWA 법적 금지와 마찬가지로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건 준수를 위해 PII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및 감사관

VAWA, FVPSA 및 VOCA 수혜자가 수혜자 재정 기록의 감사 및 연방 기금 사용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HUD 프로그램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가 모든 기록을 연방 감사 및 규제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HUD 프로그램 기금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가 PII를 합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규정은 VAWA, FVPSA 및 VOCA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PII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규정조차도 감사관이 범죄 피해자의 "실명"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감사관이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범죄 피해자의 PII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대부분은 ESG(Emergency Solutions Grant) 규정 언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4 CFR 576.500은 ESG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가 ESG 지원을 받는 모든 가족의 모든 기록에 대한 기밀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만 2 CFR 200.336의 규정에 따라 기록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접근 예외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4 CFR 576.500(x),(z). 일부는 이 ESG 규정이 VAWA, FVPSA 및 VOCA 자금을 지원 받는 ESG 자금 수령인이 전문적인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무시하도록 요구하고 HUD 감사관 및 관리자에게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및 기타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 및 개인 정보에 대해 일상적인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고 잘못 가정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VAWA, FVPSA 및 VOCA 기금 수혜자는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된 PII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ESG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규정은 법적 또는 법원의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VAWA, FVPSA, VOCA 보호 정보 공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ESG 규정이 범죄 피해자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액세스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현재 규정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ESG 수령인 및 하위 수령인은 2 CFR 200.336에 따라 기록에 대한 연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b)는 "특별하고 드문 상황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는 범죄 피해자의 실명 검토가 포함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도를 매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섹션 200.336(b)는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비정상적이거나 드문 상황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며 범죄 피해자 이름에 대한 액세스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정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이 없는 경우) 연방 수여 기관의 장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식별 정보에 대한 특별 보호에 대한 VAWA, FVPSA 및 VOCA 요구 사항은 범죄 피해자 식별 정보에 대한 강화된 보호에 대한 섹션 200.336(b) 요구 사항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 적절히 감독하는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감독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 식별 아닌 집계 정보의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VAWA, FVPSA 및 VOCA 규정은 프로그램이 “연방, 주 또는 부족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에 관한 비개인 식별 정보 및 인구통계학적 비개인 식별 정보”를 총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기밀 및 비공개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활동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고 일상적인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밀 유지 요건 및 활동에 대해 제3자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 프로그램은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번호 자체가 실수로 고객을 식별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식별자 코드 또는 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니셜, 생년월일 또는 고객이 누구인지 암시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식별자 코드에 대한 "열쇠"는 그 자체가 기밀이며 기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HUD 프로그램의 상황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생성된 고유 개인 식별 번호는 개별 개인에 대한 서비스 기록을 식별하기 위해 감사관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감독 기관은 기관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연령(생년월일이 아님) 또는 성씨에 따른 날짜 수와 같이 제공 서비스 및 인구 통계를 설명하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계 데이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감사관 또는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 고객 식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도 대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기록은 프로세스가 기밀 피해자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감사관/평가자에 의해 또는 감독하에 무작위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유 PIN 숫자 목록에서 네 번째 파일마다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동안 프로그램 관리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사관/평가자가 클라이언트 식별 정보를 볼 수 있는 방식은 아님). 그런 다음 관리자에게 서비스의 규정 준수 또는 제공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파일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하고 고객 식별 정보를 찾지 마십시오.
  - ✓ 감사관/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은 감사관/평가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요약 시트와 식별 정보를 완전히 수정하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제거하고 블랙 마커와 복사를 수동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충분한 블랙아웃의 위험을 제거하는 전자 pdf 수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 기관은 감사인/평가자에게 모든 고객 식별 정보가 효과적으로 삭제된 파일이나 파일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문서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로 확인됨). 이상적으로는 전자 pdf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합니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거하고 블랙 마커와 복사를 수동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충분한 블랙아웃의

## 위험을 제거하는 편집 프로그램

- ✓ 감사인/평가자는 체크리스트에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이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결정했음을 입증하는 체크리스트 또는 기타 양식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연방 감독 당국은 식별 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청하여 연방 기금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감사의 핵심 목표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자금의 적절한 지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공개는 실제로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는 동안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피해자 PII의 일상적인 공개는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및 기타 폭력 범죄 피해자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 연방 자금의 지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 자금 제공자는 현재 개인 식별 정보 공개에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기밀 유지 규칙(예: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따라 다양한 자금 지원 기관에 대해 성공적이고 적절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기밀 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결론

여성폭력방지법(VAWA)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FVPSA)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성인, 청소년 및 아동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은 개인 식별 피해자 정보를 추적하고 연결하는 제3자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다면,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연방 보조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Monica McLaughlin [mmclaughlin@nnedv.org](mailto:mmclaughlin@nnedv.org) 또는 Alicia Aiken [aaiken@confidentialityinstitute.org](mailto:aaiken@confidentialityinstitute.org) 에게 연락하십시오.

사회 변화 단체인 NNEDV(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www.nnedv.org](http://www.nnedv.org)



이 프로젝트는 HUD가 지원하는 CoC(Continuum of Care)와 ESG(Emergency Solutions Grant) 주택 및 컴퓨터 프로그램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Grant #2015-AX-K009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 출판물/프로그램/전시에 표현된 의견, 결과, 결론 및 권장 사항은 저자의 것이며

## 가정 폭력 및 주택 기술 지원 컨소시엄

2015년에 출범한 본 컨소시엄은 가정 폭력/성폭력 지원 서비스와 노숙자 지원 서비스/주택 사이의 중요한 교차점에서 교육, 기술 지원 및 자원 개발을 제공합니다.

미국 법무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다년간의 컨소시엄은 안전한 주택을 위한 전국 연합(안전 주택을 위한 지구 연합 프로젝트),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가정 폭력에 관한 국가 자원 센터 및 Collaborative Solutions, Inc.을 포함하는 협력 TA 팀을 지원하여 주택/노숙자 서비스 제공자와 가정 폭력/성폭력 지원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 대한 기술 지원을 구축하고 강화합니다. 컨소시엄은 정책을 개선하고, 유망한 관행을 식별하며,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주거 옵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컨소시엄 TA 팀은 가정 및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옵션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에 개별화된 TA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옹호자, 노숙자 및 주택 제공자, 그리고 더 강력한 커뮤니티 협력 구축에 관심이 있는 기타 제휴 파트너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SAFE HOUSING  
PARTNERSHIPS

[SafeHousingPartnerships.org](http://SafeHousingPartnerships.org)를 방문하여  
포괄적인 온라인 리소스 모음에 액세스하고  
기술 지원과 지지를 요청하십시오.

<sup>1</sup> **VAWA 섹션 605:** HMIS에서 PII 공개를 금지하는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개정안

**42 USC §11363**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의 개인 식별 정보 보호.

이 항에 따라 보조금을 수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수혜자 또는 하위 수혜자인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에 지시해야 합니다. 공시 및 의견 수렴 후 장관은 비식별화, 암호화 또는 암호화된 비개인 식별 정보를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의 목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러한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 대해 이 항에서 보다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의 조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42 USC §11360** – 정의.

**(16)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라는 용어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위치를 공개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을 위한 또는 개인에 대한 개별 식별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i) 이름과 성;
- (ii) 집 또는 기타 물리적 주소;

- (III) 연락처 정보(우편, 이메일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전화 또는 팩스 번호 포함);
- (IV)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 (V) 생년월일, 인종 또는 민족 배경 또는 종교를 포함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에 도움을 주는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

**(32)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라는 용어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임무인 민간, 비영리, 비정부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에는 강간 위기 센터, 폭행당한 여성 쉼터, 가정 폭력 임시 주택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sup>2</sup> VAWA 2013 섹션 3 (34 USC §12291) 관련 부분에서,

- (A)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성인, 청소년 및 아동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표제에 따른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기밀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 (B) 비공개. (C)항 및 (D)항에 따라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 (i) 정보의 인코딩, 암호화, 해시 또는 보호 여부에 관계없이 수혜자 및 하위 수혜자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 활용 또는 거부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또는
  - (ii) 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연방, 주, 부족 또는 영토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별 고객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또는 미독립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와 부모 또는 보호자,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학대자,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의 다른 부모에 대한 학대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C) 공개. (B)항에 기술된 정보의 공개가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 (i)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시도를 해야 하고, &
  - (ii)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D) 정보 공유.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 (i) 연방, 주, 부족 또는 영토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집계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 및 인구 통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ii) 보호 명령 집행 목적으로 안전한 정부 등록부에 포함된 법원 생성 정보 및 법 집행 기관 생성 정보, 그리고
  - (iii) 법 집행 및 기소의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이 생성한 정보.
    - (ii)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I)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성인, 청소년 또는 아동 피해자는 수혜자 또는 하위 수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자격 조건으로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
      - (II) 이 프로그램이든 기타 연방, 부족 또는 주 보조금 프로그램이든 상관 없이, 연방, 부족/주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sup>3</sup>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기밀 유지 섹션 42 USC 10406(c)(5) 42 USC

10406(c)(5)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c) 보조금 조건...
- (5) 기밀 또는 개인 정보의 비공개.
- (A)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성인, 청소년 및 아동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표제\[42 USCS §§ 10401 et seq.\]](#)에 따른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그러한 피해자와 가족의 기밀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 (B) 비공개. (C)항 (D)항 및 (E)항에 따라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 (i)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의 프로그램으로 요청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 (ii) 이 프로그램이나 기타 연방/주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를 찾는 사람의 정보에 입각한 서면 동의 없이는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I) 다음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aa) 항목 (bb) 또는 (c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사람;
      - (bb)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cc) 후견인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그 개인의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개인의 학대자 또는 학대 혐의자가 보호자와 함께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다른 부모에 대한 학대자 또는 학대 혐의자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 (III) 미성년자 또는 개인의 학대자 또는 학대 혐의자가 보호자와 함께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다른 부모에 대한 학대자 또는 학대 혐의자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 (C) 공개. (B)항에 기술된 정보의 공개가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 (i)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 (ii)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D) 정보 공유. 수혜자와 하위 수혜자는--
      - (i) 연방, 주 또는 부족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비개인 식별 정보와 인구통계학적 비개인 식별 정보를 총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ii) 보호 명령 집행 목적으로 안전한 정부 레지스트리에 포함되는 법원에서 생성된 정보와 법 집행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iii) 법 집행 및 기소의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이 생성한 정보.

**4 범죄피해자법(VOCA) (42 USC §10601 이하 참조) 28 CFR 94.11 규정기밀 또는**

**개인 정보의 비공개**

- (a) 기밀성. SAA 및 VOCA 기금의 하위 수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 정보와 기밀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 섹션의 (b)항과 (c)항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요청, 활용 또는 거부된 VOCA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정보는 해당 정보가 인코딩, 암호화, 해시 또는 보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 (2) 미성년자 학대자, 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의 다른 부모 학대자가 공개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구하는 사람의 정보에 입각한 서면 동의 없이는 개인 고객 정보에 합리적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자가 법적으로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추가 동의 없이 정보 공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b) 공개. 이 섹션의 (a)(2)항에 설명된 정보의 공개가 법적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SAA 또는 VOCA 기금의 하위 수혜자는 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시도를 해야 하며 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개인 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c) 정보 공유. SAA 및 하위 수혜자는--
  - (1)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비개인 식별 인구통계 정보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비개인 식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2) 보호 명령 집행 목적으로 안전한 정부 등록부에 포함된 법원 생성 정보 및 법 집행 기관 생성 정보; 그리고
  - (3) 법 집행 및 기소의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이 생성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d) 개인 식별 정보. 어떤 상황에서도--

- 
- (1) 범죄 피해자는 VOCA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격 조건으로 개인 식별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프로그램의 보고, 평가 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공유됩니다;